

[변경 대비표]

1. 펀드명 : 우리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기준일 : 2022.05.27

3. 효력발생일 : 2022.06.03

4. 정정사유

- ① 정기갱신
- 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③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④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 영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추가>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 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 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 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 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업자 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 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종 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 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 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금전 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 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 눈 금액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수익권의 분할)	제9조(수익권의 분할)

개정사항 반영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수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삭제>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

	<p>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추가>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삭제>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오기정정</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정정</p>	<p>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p>	<p>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p>

	<p>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p> <p>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자의 이행명세</p> <p>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제25조(판매가격)</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제25조(판매가격)</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한다.)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한다.)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오기정정</p>	<p>제28조(환매연기)</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8조(환매연기)</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종류 수익증권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p>	<p>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당해종류 수익증권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당해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p>

	<p>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p><추가></p>	<p>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재무상태표</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 정정</p>	<p>제37조(수익자총회)</p> <p>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p> <p>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p> <p>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3항, 제5항, <추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p>제37조(수익자총회)</p> <p>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p> <p>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p> <p>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으로 정하는</p>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 정정	제39조(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39조(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가>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운용전문인력 -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운용전문인력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요약정보] 매입방법, 환매방법	[요약정보] 매입방법, 환매방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X영업일	X영업일
집합투자업자 연락처 변경	[요약정보] 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 02-3770-1300	[요약정보] 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 02-2118-0500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연락처 : 02-3770-1300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연락처 : 02-2118-0500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5부.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5부.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제2부. 8.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추가>	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제2부. 10.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8.07% 로 6등급 체계 중 4등급(표준편차 10%이하)에 해당하는 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10.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8.24% 로 6등급 체계 중 4등급(표준편차 10%이하)에 해당하는 보통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제 X 영업일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X 영업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3부. 1. 재무정보,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대차대조표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3부. 1. 재무정보,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추가>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연혁 신설 다. 최근 2 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연혁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다. 최근 2 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신탁업자) <추가>	항(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채권평가회사 사명변경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채권평가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자산평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영	제5부. 1. 가.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추가>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제5부. 1. 가.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5부. 2. 가. 의무해지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5부. 2. 가. 의무해지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나.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추가>	제5부. 3. 나.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매입방법, 환매방법 제X영업일	매입방법, 환매방법 X영업일
집합투자업자 연락처 변경	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 02-3770-1300	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 02-2118-0500

